

코오롱, 원주~강릉 철도 차량기지 공사 따내

코오롱글로벌이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 공사를 따내며 새해 공공공사 마수결이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8일 최근 개찰을 집행한 이 공사에 대한 저가심사를 마무리하고 코오롱글로벌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를 보면, 1단계 입찰금액 적정 심심사에는 13개 투찰사가 모두 통과했으

나 2단계 심사에서 상위 5개사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저가순 6번째인 코오롱글로벌이 수주에 성공했다.

낙찰금액은 949억334만5300원으로, 복수예정가격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면서 낙찰률은 82.251%를 기록했다.

이로써 70.6%의 지분을 갖고 대표사로 이번 입찰에 참가한 코오롱글로벌은 약 67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봉승권기자 skbond@

아하! 그렇구나

선정당사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이의 소의 피고적격

Q 시공사 A사는 도심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공하던 중 터파기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인근 가옥과 상가의 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피해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인근 가옥과 상가의 소유자들인 피해자들이 A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 가운데 법률 지식에 해박한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습니다. A사는 위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마침 진행 중이던 A사 소유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위 판결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면서, 다시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법원이 B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각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자, C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그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B는 C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는 피해자들에게 배당된 금액 전액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B만을 피고로 삼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B를 포함한 피해자들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이를 선정당사자 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집단적인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인의 소송관계를 단순화시켜 신속하고 경제적인 권리구제를 이루기 위해서 인정됩니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소송뿐만 아니라 보전절차, 집행절차, 독촉절차, 제소전 화해, 공정증서 작성행위 등에서도 실무상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만약 관계인 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

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52조 제2항).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54조 제1항).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궁극적으로 배당을 받아갈 채권자는 B를 포함한 피해자들 전원이라는 점에서 배당이의의 상대방 및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피고)도 피해자 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따라서 선정자인 피해자들이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 등의 사정이 없는 한, C는 선정당사자 B만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위한 배당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역시 선정당사자 B만을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